

문서번호	감사팀-618
보존기간	중영구
결재일자	2015.10.30.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437)호

★팀장	실장	대표이사
협 조		
경영기획본부장		
팀장		
차장		

「서울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IV 행동강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고, 제단의 공식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의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재단 소유의 재산 EH는 예산 사용을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의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재단 소유의 재산 또는 예산 사용을 통해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1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생략> ② 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신설></p>	<p>제21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경우 그 대가는 별지 제9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이 외부강의·회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 책임관이나 대표이사 또는 국가정립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p> <p>② <생략> ③ <생략></p>	<p>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재단 부조리통합신고센터나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나 대표이사 또는 국가정립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서울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재단 임직원이 부당한 직무수행의 강요나 청탁을 받은 경우 의무 등록 및 신고 근거를 마련하고, 외부강의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기준 등을 설정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동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I 임직원 행동강령

- 연혁: 2007. 10. 9.일 제정 이후 4차례 개정
- 구성: 행동강령 조항(제1~37조), <별지 제1~9호>
- 목적: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서울문화재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

II 개정 근거 및 배경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2142(2015.09.30.)호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
- 서울시 감사담당관-6435(2015.04.27.)호 "2015년 투자·출연(출자)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계획" 측정사항
 - 평가지표 1. 청탁등록시스템 운영(비밀보장, 인센티브 포함)
 - 평가지표 14. 공익신고 활성화 노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III 주요 개정 내용

- 부당한 직무수행 강요나 청탁에 대한 등록 및 신고 근거 마련
-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에 원고료 포함
- 외부강의·회의 등의 횟수·시간 제한기준 마련
-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 금액 반환 의무화 등

현행		개정안																															
<p>제32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p> <p><별지 제9호></p> <p style="text-align: center;"><u>외부강의의 대가기준(제21조 관련)</u></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천원/1시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구분</th> <th>대표이사</th> <th>3급 이상</th> <th>4급 이하</th> <th>비고</th> </tr> <tr> <td>상한액</td> <td>400</td> <td>230</td> <td>120</td> <td>원고료·의비 미포함</td> </tr> <tr> <td>1시간 초과</td> <td>300</td> <td>130</td> <td>100</td> <td></td> </tr> </table> <p>* 동 기준은 직무관련 외부강의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p>		구분	대표이사	3급 이상	4급 이하	비고	상한액	400	230	120	원고료·의비 미포함	1시간 초과	300	130	100		<p>제32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제21조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반환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p> <p><별지 제9호></p> <p style="text-align: center;"><u>외부강의의 대가기준(제21조 관련)</u></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천원/1시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구분</th> <th>대표이사</th> <th>3급 이상</th> <th>4급 이하</th> <th>비고</th> </tr> <tr> <td>상한액</td> <td>400</td> <td>230</td> <td>120</td> <td>원고료 포함 의비 미포함</td> </tr> <tr> <td>1시간 초과</td> <td>300</td> <td>130</td> <td>100</td> <td></td> </tr> </table> <p>* 동 기준은 직무관련 외부강의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p>		구분	대표이사	3급 이상	4급 이하	비고	상한액	400	230	120	원고료 포함 의비 미포함	1시간 초과	300	130	100	
구분	대표이사	3급 이상	4급 이하	비고																													
상한액	400	230	120	원고료·의비 미포함																													
1시간 초과	300	130	100																														
구분	대표이사	3급 이상	4급 이하	비고																													
상한액	400	230	120	원고료 포함 의비 미포함																													
1시간 초과	300	130	100																														

V 후속 조치사항

- 2015. 11~12월: 대표이사 승인 이후 개정된 내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
- 2016. 1. 1.일: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시행

붙임: 서울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1부. 끝.